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207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적검토	2
2. 개별적 검토: 「고용보험법」	4
3. 개별적 검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7
4. 개별적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검토

종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문제가 있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¹⁾에서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로의 개편은 행위능력을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임.

<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의 비교

성년후견제 도입 전	성년후견제 도입 후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 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대 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 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대 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1) 법률 제10429호. 2011. 3. 7. 개정

그러나 종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에서는 개정 민법 시행 이후 단순히 용어만 대체하여 정비(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동의유보를 결정하지 않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검증 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제출된 법률안은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다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i) 임명·지정 등에 있어 사전에 직무수행능력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ii) 심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 위원 등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규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여부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개별적 검토: 「고용보험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④----- ----- --.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

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함)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임.

한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음.

개정안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고용보험 재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하

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통제장치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데,²⁾ 현행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가능 대상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후통제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행 「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

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별적 검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 ----- ----- -----.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u>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u>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제34조(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1. <u>피성년후견인</u>

나. 검토의견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뜻하고, 그 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지정직업훈련시설”이라고 하며,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고 함.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 실시 경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³⁾ 동 지정 절차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실시 능력을 사전에 다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 ② ~ ④ (생략)

보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해당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⁴⁾ 피한정후견인의 직

-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③ ~ ④ (생략)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재직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의 강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다고 보여짐.

4. 개별적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

비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보험급여, 진료비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고 함)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 및 위원은 ①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③「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노동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직위나 관련 경력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면직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심신 상실자·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538